

대전광역시 대덕구

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관(부서)의 장
람	



제2023-12호
2023. 3. 3.(금)

차 례

고 시(1)

-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(고시 제2023-20호) 1

공 고(1)

-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(공고 제2023-241호) ... 2

공										
람										

발행: 대전광역시 대덕구 / 편집: 기획홍보실우: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(오정동) ☎ 608-6602

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3-20호

도로명주소 부여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3월 3일

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부여

지 번 주소	도 로 명 주소	부여 고시일	도로명주소 부여 사유	도로명 부여사유 (도로명 고시일)
신탄진동 152-18, -19	신탄진로 786	2023. 3. 3.	건물신축	신탄진으로 가는 주요 도로의 기능 반영
신탄진동 152-20, -21	신탄진로 788	2023. 3. 3.	건물신축	신탄진으로 가는 주요 도로의 기능 반영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토지정책과(☎ 042-608-5306)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http://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❖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 끝.

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
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8조(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)제1항 및 제31조(과태료)제2항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차량 소유자에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(의견제출 안내)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3조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3년 3월 3일

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

1. 제 목: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2. 공고기간: 2023. 3. 3. ~ 2023. 3. 18.(15일간)
3. 공고대상 / 3명

연번	성명	차량번호	주소	위반내용	과태료(원)	반송 사유
1	장*강	89어288*	대전광역시 유성구 송림로	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위반 (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)	100,000 (감경 80,000)	폐문 부재
2	호**** **협회	92어143*	대전광역시 중구 대전천서로	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위반 (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)	100,000 (감경 80,000)	폐문 부재
3	황*만	80가293*	충남 금산군 제원면 제원 1길	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위반 (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)	100,000 (감경 80,000)	폐문 부재

4. 공시송달내용

-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)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사전통지 하오니 공고 기간 내에 대덕구청 환경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거나 대덕구청 환경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만약 공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며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8조(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) 규정에 따라 공고 기간 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0%를 감경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5. 문 의 처: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과(☎ 042-608-6864) 끝.